

2004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당신들의 것!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 학생의 자치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학생청소년위원회

힘내라 학생회!
미래는 당신들의 것!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 학생의 자치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학생청소년위원회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를 내며

학생의 예배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46일간의 단식

최근 강의석군의 오랜단식이 요구한 것은 학생의 예배선택권이었다. 거대한 교육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종교의 개혁을 이야기 한 것도 아니다. 그냥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비종교인 학생들에게 예배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고 한 것이 강의석군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강의석군은 이 문제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 현재 학교는 예배선택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강의석군은 2차 단식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기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 것이다.

학생들이 지켜야할 학생생활규정에 학생의 의견은 없다

예배선택권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학생생활규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의 특징을 '첫째, 누가 만든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적용하는 교사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다 셋째, 황당하다' 로 규정한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을 학생들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각적으로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결정된 자기의 생활규율, 단속하는 교사에 따라서 규정을 어긴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고무줄 같은 생활규정을 누가 지키고 싶겠는가

학생들의 학습도 억지와 강요로

올 초 물의를 빚었던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강제적 시행문제도 학생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 해왔다. 학생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강제자율보충수업이 오히려 능률적인 학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측에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학생들에게 일괄 적용하려고 하니 마찰이 생기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생활 학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학생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결정된다는데 있다. 당사자들이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를 배제한채 결정하게 되니 결정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억누르고 강요해서 시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요되는 지배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항하거나, 무기력하게 순종하거나, 열심히 쫓아가는 것 뿐이다.

학생 자신의 문제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해야 책임도 스스로 진다.

학생들의 문제에서 억지로 강제로 시행할 수 있다는 교육방침은 갈수록 학생들 앞에서 무기력해질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해야 책임성 있는 실천이 뒤따를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인 학생에게 물어야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는 결국 학생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아무 결정권이 없는 학교생활 학생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하게 만든다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에게 어떤 권한을 주자고 하는 취지 일 뿐 아니라 막히고, 비뚤어져 있는 학교사회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공교육이 죽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큰 문제라면 학교의 주체인 학생에게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하게 만든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이다. 그것도 특히 학교에서는 가장 심하다 학교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의욕도 없다. 이런 죽어있는 학교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자치활동이다.

학생회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 자료와 학생회 임원들의 설문조사, 각 학교의 학생회칙을 분석해 봄으로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자치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2004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최순영

순서

■ 학생회칙에서 학생 자치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 p.1

-학생회칙 분석

<참고자료1> 지도' 는 없고 '자문과 조언' 만 있다 p.7

- J고등학교의 모범적 학생회칙

■ 학생회 담당교사들의 학생회 운영 현황 보고 자료 분석 p.18

■ 학생회 임원들의 학생회 운영 현황 설문조사 분석 p.26

■ 학교는 공개한다! 학생은 전혀 모른다! p.28

같은 학교의 교사 보고서와 학생임원 설문 비교

<참고자료2>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p.36

-학생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도했던 어느 학생회장의 답변서

<참고자료3> 학생의 권리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p.39

<참고자료4> 그래도 희망은 있다 p.44

-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쓴 활동사례 -

학생자치활동 현황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한 중학교31개, 인문여고20개, 인문남고20개, 인문공학11개, 실업고15개, 특목고 6개로 총103개를 요청했으며, 전남, 울산, 경남, 강원 교육청에 중학교 10, 인문여고 3, 인문남고 3, 인문공학 3, 실업고 3, 특수목적고 3를 지정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 고등학교 104개, 중학교 48개가 수합되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학생회칙이나 생활규정을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82개의 학생회 관련규정이 수합되었다.

학생설문은 교육청 자료를 요청한 학교 중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답변이 온 14명의 설문을 수합해서 분석되었다.

학생설문 답변중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총7개 학교의 교사제출자료, 학생임원설문이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조사 기간

조사기간은 교육청 9월16일~10월 2일

학생회 임원 설문조사는 10월8일~10월16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이 짧아 학생설문이 많이 수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분석 방법

자료요청은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등 골고루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서울과 지방, 고등학교와 중학교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학생회칙은 교육청의 예시안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따로 통계를 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기본회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협조해주신 전국의 학생회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식 설문문항에 성의껏 답해준 학생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회칙에서 학생 자치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나?

- 학생회칙 분석 -

학생회칙을 총 82개 수합했으나 모든 학생회칙이 교육부 시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일부에서만 차이가 있어 통계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교육부의 기본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학생회 목적, 구성,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서 학생회의 자치권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학생회의 목적 규정

특별활동 교육활동의 일환, 자치활동으로 보지 않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나를 학생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도해야 할 학생 개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모 고등학교 학생회장의 말)

(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위원을 구성하며 대의원회회의 기구를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목적을 특별활동의 일환 또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활동으로서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회장들이 호소하는 ‘학생대표로 보지 않는다. 어린학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내용이 교사 개개인의 의식에 문제가 아니라 학생회를 법적,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대표기구, 자치기구로 보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금지활동

학생은 정치활동 안된다, 학교장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당우이다. 학생회칙에 의하면 나는 당장 처벌 받는다”(민주노동당 청소년당우의 말)

(금지 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학생회칙에 한건도 예외없이 삽입된 조항이었다. 생활규정상에도 조항 뿐 아니라 학생

회칙에 <금지활동>이라는 것으로 명문화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적 집단에 지지를 표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적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음으로서 학생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묶어두고 배제하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사항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회 활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학교의 운영문제, 교육방침, 학생의 정치적 요구등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서 학생회의 활동은 친목도모와 심부름꾼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이다.

● 학생회의 기능 - 지도위원회와 비교 했을 때
학생회는 심부름꾼 지도위원회가 학생회?

(학생회기능)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나. 정서 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 라.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마. 각종 봉사 활동
 - 바. 학교 또는 지역 사회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사.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위 1항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학생지도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지도위원회 기능)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가.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 다.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라.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마.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전 항의 지도는 사전과 사후의 지도를 포함한다.

학생회의 기능과 지도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회 사업과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모두 지도위원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의 주요권한인 회칙 재개정, 임원임명, 예결산, 학생회운영, 대의원회 운영위 지도 등 결국 학생회 지도 육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사전 사후 지도를 포함한다고까지 명시함으로써 지도위원회가 결국 학생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학생회의 역할은 학생들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중심이 있기 보다

는 학교, 교육업무의 부차적인 잡업무를 하거나 심부름꾼으로서의 부차적인 역할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학생의 본분에 맞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지도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도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본 위원회는 학생회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한다.'라고만 명시한 회칙도 있었다.

● 학생지도위원회

모든 결정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가 한다

- (기구) 1. 본회는 본 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2. 본 회의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구성의 중심은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이다. 기타 학급회의를 둔 경우가 종종있고, 클럽활동 협의회가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눈에 띈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학생지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회 활동의 결정적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학생지도위원회는 모든 학생회 활동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 항목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안건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3일 전에 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의원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월1회로 학교별 차이가 있었다.

대의원회의 임시회의는 학생 회장, 재적 대의원 1/3 이상, 운영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지도교사와 협의를 거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 소집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은 상정할 안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 안건을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의원회 개최와 논의를 지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구조화 하고 있다.

전 교원이 지도위원회 - 학생회 모든활동을 전교원이 지도한다.

- (구성)
1. 학생지도위원회는 전교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의 원활한 지도와 운영을 위하여 학생지도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가. 학생지도상임위원회는 교장, 교감, 학생회지도담당부장, 각학년부장 및 학생회지도교사로 구성한다.
 - 나. 학생지도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간사는 학생회지도부장교사가 된다.

학생회 활동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도위원회의 구성이 놀랍게도 전교원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지도위원장은 학교장이 말고 부지도위원장은 교감이 맡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학생회는 전교사의 지도(간섭)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장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학생회의 가장 주요한 활동인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몇일로 하느냐, 개방하느냐 마느냐 등을 결정하는데서 학교장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조항이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 재정

학생회장이 작성해야 할 예결산안은 누가 작성하고 있는가?

제29조(예산)

1. 본 회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지원하며 본 회의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회비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학생회 예산은 '학교운영지원회계' 또는 '학생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

(예산편성)

학생회장은 회계 연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학생지도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편성한다.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안에 대해서 실제 학생회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로 최종 편성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최종결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발언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학생회장이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설문결과 학생회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봐서 예결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회 예결산서는 누가 작성하고 있을까?

●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규정

교사추천 없이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선출 방법)

1.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본교 재학생들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일 때에는 재 학생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되며, 재학생들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출마 방법)

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자 중 상급 학년 부회장은 회장과 동반 출마하고, 하급학년 부회장은 개별 출마한다.

선출방법은 대부분 직접, 비밀투표로 하였으며 일부는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대의원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출마방법은 동반출마 경우와 단독출마가 비슷한 숫자로 시행되고 있다.

(후보 등록)

1. 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담임 교사와 재학생 50명 이상이 서명한 후보자 추천서 및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교사의 추천(담임1명 ~ 5.6명까지)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했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추천만으로 출마 가능한 학교는 극소수였다. 교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특히 담임교사의 추천이 없이는 출마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학생들도 학생회장이 누군지 모른다.

(선거 운동)

1. 선거 운동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 선물 제공 등 불건전한 선거 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2.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공고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3.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1회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학년별, 학급별 소견 발표는 금한다.
5. 합동연설회의 연설문 내용은 합동연설회 2일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연설문의 분량은 1인 연설 소요 시간 10분에 해당하는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제한하며, 소견 발표 시간을 초과할 때는 1차 경고 후에 중단시킨다.
7.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 소견문 내용과 상이한 소견 발표 시는 발표를 중지시킨다. 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8.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9. 후보자는 찬조 연설자 1명을 지정하여 합동연설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찬조 연설자도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0. 선거 운동을 위한 후보자 개인의 전단 작성 및 배포를 금지한다.
11.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2절지 크기의 전단 5매에 한해 학생지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2. 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한다.
13. 학교 밖에서는 어떤 형태의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다.

선거방식은 합동연설회 1회와 검인을 받은 게시물 5매~10매를 게시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연설은 5분정도로 연설문을 반드시 사전 검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급별 소견발표는 대부분 금지하고 있고 일부가 허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생회장이 누군지 물어보면 거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회장이 누구인지 알 기회가 거의 없으며 1회의 합동연설과 선거포스터 몇장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도위원회가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각 학년별 대의원 3명씩을 선출하여 구성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선거관리위원은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전 학생회장인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도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아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되어있다.

<참고자료1>

‘지도’ 는 없고 ‘자문과 조언’ 만 있다

- j고등학교의 모범적 학생회칙 -

학생회칙중 눈에 띄는 학생회칙을 발견했다.

이 학교는 ‘지도위원회’ 가 없고 대신 학생회 활동에 자문 하고 조언 하는 ‘자문위원회’ 가 있다.

이 학생회칙은 목적에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며 ...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 고 명시하며 내용에서도 그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사들의 자문, 조언의 역할을 명시 하고 있다.

<다른 회칙과 구분되어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규정>

- 학생회 목적은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며 ...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
- 학생회 기능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자율적 자치활동
- 자문과 조언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안에 실무를 위하여 ‘자문지도 소위원회’를 둔다.
- 학생회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 『학생총회』
- 예산은 운영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확정
- 예산 결산 보고서는 대의원회에 제출
- 회칙개정 발의되면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를 구성 회칙개정안을 작성
- 선거운동은 합동 연설, 방송 연설, 개별연설 모두 가능
-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열람하며 이의제기를 받는다
- 모든 선거운동은 지도위원회의 지도가 아니라 회칙에 의거해서 선관위의 지시를 받는다
- 학생회 정부회장 투표결과는 자문위원회에 통고만 하고 바로 게시판에 공고하면 효력이 발생

j 고 등 학 교 - 학 생 회 칙 -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회는 학생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취미 및 특기를 신장하여 건전한 학풍 조성

여하는 한편 자율적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슬기롭고 책임감 있는 전인적 인간이 되게 한다.

제 2조(명칭)

본회는 'j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 3조(기능)

본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자율적 자치활동
- 2) 학업,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족,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활동
- 5)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
-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여러 활동

제 4조(활동범위)

본회의 활동은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제 6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참여할 권리 의무를 지니고,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조직)

본회는 학생 총회, 대의원 총회, 운영 위원회, 학년 회의, 학급회의로 구성된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자문과 조언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안에 실무를 위하여 '자문지도 소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학생 총회

제 9조(학생 총회의 구성과 기능)

본회는 j고등학교 학생회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 정.부 회장 선출
2. 기타 중대한 학생회 활동에 관한 의결

제 10조(학생총회의 의장)

본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께위시는 총무 부장이 대행한다.

제 11조(소집)

제 1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집한다.

제 12조(공고)

본회의 개최는 최소 5일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주제를 공고한다.

제3 장 대의원회

제 13조(구성과 기능)

본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지닌다.

1. 학생회칙 제개정의 발의 및 제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임시 학생총회 소집 요구
3. 학생회 사업의 계획, 심의, 승인
4. 학생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
5. 운영위원회 및 학년, 학급 회의에서 부의한 안건의 토의
6. 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
7. 건의 사항의 수렴 및 추진
8. 기타 대의원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4조(의장)

본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며 께위시는 총무부장이 대행한다.

제 15조(소집)

본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1.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 회의는 다음의 경우 개최한다.
 - (1) 대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 (2)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3) 자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16조(구성과 기능)

본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1.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및 집행 결과 보고
2. 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3. 대의원회 소집 요구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5. 대의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위임한 사안 처리

제 17조(조직)

본회는 아래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학생회 사업에 관한 기록 및 추진 재정 관계 업무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교양, 취미 및 학생회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3. 체육부 : 학생회 회원의 심신 단련과 상호 유대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
4. 홍보부 : 학생회 사업의 대내외적 홍보 및 학생 여론 수렴
5. 생활부 : 각종 캠페인 활동 및 행사 진행
6. 환경부 : 환경보전 활동 및 각종 환경 미화 활동
7. 정보부 : 인터넷을 통한 학생회 사업의 대내외적 홍보 및 학생 여론 수렴
8. 동아리 연합부 : 동아리간 이해 조정과 연대 강화 활동

제 18조(운영 위원회 회의)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 위원회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3. 자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5 장 학년 회의

제 19조(구성과 기능)

본회는 각 학년의 정부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 집행 기구로써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각 학년에만 해당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 학년에만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3. 각 학년 안전중 타학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에 대한 의결 및 집행

제 20조(의무 규정)

본회에서 결의 집행하는 모든사안은 학생회장 및 해당 학년주임의 자문을 얻어야 하며 그 집행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학급회의

제 21조(기능)

본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 및 기능을 갖는다.

1. 학급 정, 부 반장의 선출
2. 주 의제에 따른 실천사항 토의
3. 학교 및 학생회의, 학년회의에 부의할 안건 결정
4. 기타 토의 사항

제 22조(의장과 조직)

의장은 해당학급의 반장이며 궐위시는 부반장이 대행하고 학급의 형편에 따라 제 18조에 상응하는 부서를 둘수 있다.

제 23조(회의소집)

본회의는 매주 정기회의와 회원 1/3 이상이 요구할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 7 장 자문위원회

제 24조(구 성)

본회는 전체 자문 위원회와 자문 지도소위원회를 둔다.

1. 전체 자문 위원회 : 전교 직원으로 구성되며 위장은 학교장이다.
2. 자문 지도소위원회 : 운영 위원회 각부서와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교감이 된다.

제 25조(기능)

각 자문 위원회는 해당 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 조언할 수 있다.

제 8 장 임 원

제 26조

본회의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 위원회 각부서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정부 반장으로 한다.

제 27조(임원의 기능)

-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3학년 회의의 의장으로서 각 회의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 2. 부회장 : 1,2학년에 각각 1인을 두어 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학년 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운영 위원회 부장, 차장 및 부원 :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 4. 학급 정·부회장 : 소속 학급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서 해당 회의를 주관하며 학급 회원의 여론을 수렴 전달한다.

제 2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본 회의 각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임원 선출 관리 규정의 해당 항에 따른다.
- 2. 임원의 임기는 당해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29조

본 회의경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 1. 학생 회비 금액은 자문 위원회 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 2. 기타 수익금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충당한다.

제 30조(관 리)

학생회비의 수입, 지출업무는 학교의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의 지출서는 해당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총무부장 및 학생회장의 결정과 자문 위원회의 동의,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제 31조(예산의 결정 및 심의)

- 1. 예산의 운영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 2. 예산 편성이 늦어져 학생회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와 자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년도에 준 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3. 필요시 추가 경정 예산을 둔다.

제 32조(결 산)

운영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10일 이전에 예산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장 의 결

제 34조(정족수)

각급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회 칙 개정

제 35조(발 의)

본 회칙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발의를 의결한다.

제 36조(개정 기초 위원회)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개정 발의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안에 5인에서 10인 이내의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 를 조직한다.

제 37조(개정안의 확정)

'학생 회칙 개정 기초 위원회' 는 조직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 총회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제 38조(회칙의 유효 기간)

본 회칙은 회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유효하다.

제 12 장 부 칙

- 1.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3일간의 공고 후 효력이 발생된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통례에 준하되 그 해석은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3. 본 회칙은 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출 규정

가. 정, 부 회장

- 1조 1. 본 회의 회장과 2학년 부회장은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2. 1학년 부회장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조 (선거 시기)

1. 회장과 2학년 부회장 선거는 임기 전 해의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학년 부회장 선거는 임기 당 해의 3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선거권, 피선거권)

1. 정, 부회장 선거권은 전 회원에게, 1학년 부회장은 대의원에 있다.

2. 피선거권은 전 회원 중 다음의 회원에게 한한다.

- ㄱ.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ㄷ. 유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조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

1. 선거일이 확정되는 즉시 회장은 '선관위' 를 조직한다.

2. 선관의 위원장은 회장, 선관위 위원은 1,2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의원은 구성에서 제외한다.

3. 선관위원회는 어떠한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4. 선관위 위원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정히 주관한다.

5조 (선거관리 규정) 정, 부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둔다.

나. 대의원

6조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각 학급의 정,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7조 (선거시기) 당해 3월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조 (선거권 피선거권)

1. 선거권은 전 학급회원에게 있다

2. 피선거권은 3조 2항에 준한다.

9조 (보궐선거) 반장이 궐위시에는 부반장이 반장이 되고 공석이 된 부반장은 6조에 준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잔임 기간이다.

10조 선거의 구체적 방법은 각 학급의 여건에 맞는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다. 운영위원

11조 운영 위원회 각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정. 부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12조 (동회의 재 제청)

1.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운영 위원은 1회에 한해 재 제청 받을 수 있다.

2. 재 제청에 의해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운영위원회에 대해 정. 부회장은 다른 이로 제청하여야 한다.

13조 (선출시기) 당해 4월중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조 (자격) 제 3조 2항과 같다.

선거 관리 규정

1조 (공 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일시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2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2. 입후보자 등록 마감 일로부터 3일간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으로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2일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그 이의를 재심하여 가부를 '이의제출자' 에게 통보해야 한다.

3조 (입후보)

1.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권자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와 담임 교사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추천인은 2인 상 추천 할 수 없으며, 2인 이상 추천 시에는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4조 (등록 취소) 입후보자가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요건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선관위 위원장이 지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사유를 밝혀 등록 무효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5조 (후보자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입후보자 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한다.

6조 (선거 운동)

1.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에 사용할 모든 홍보물은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선거연설은 합동 연설, 방송 연설, 개별 연설이 있다.

1) 선거연설

- ㄱ. 선거일 3일전에 동일 장소에서 합동연설을 실시한다.
 - ㄴ. 각 후보자 마다 1인의 찬조 연설을 할 수 있다.
 - ㄷ. 연설순서는 후보자들 간의 추첨으로 정하고 찬조연설은 각후보자의 연설직전에 한다.
 - ㄹ. 후보자의 연설은 5-7분. 찬조 연설은 5분의 제한시간을 갖는다.
- 2) 방송연설
- ㄱ. 선거연설기간중 신청 시간 제한하여 5-7분간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 ㄴ. 방송연설을 희망하는 후보는 희망일의 3일 이전에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 3) 개별연설
- ㄱ. 각 후보자는 휴식 시간과 방과후에 한하여 개별 연설을 할 수 있다.
4. 모든 선거운동은 회칙에 의거한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조 (선거 방법)

1. 선거는 회원 전체의 단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다득표자가 2인일 때는 대의원의 재투표로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3. 입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의 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

8조 (투표)

1. 개표는 선관위에서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 시에도 참관인이 된다.
2.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표수, 기권표수 오차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지정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어느 난에도 기표되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혹은 기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것.
 - 3) 공인되지 않은 기호로 표시된 것.
 - 4) 투표 용지에 낙서가 된 것.
4. 오차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수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수로 한다.

9조 (당선 공고)

1.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관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자문 위원회에 통고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 단, 선거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선거를 취소하고 그 사

유를 공고한다.

10조 (재선거와 보궐 선거)

1.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되 그 절차는 1차 선거와 동일하다.
 - 1) 당선인이 없을 때
 - 2) 당선이 취소 되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잃었을 때
 - 4) 오차가 득표자 1,2위의 표차를 초과하였을 때
2. 학생회 정, 부회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00일 이상인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총무부장을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학생회 담당교사들의 학생회 운영 현황 보고 자료 분석

<통계>

구분		인문계	실업계	총원
서울	고등학교	37	12	49
	중학교	24		24
지방	울산	고등학교	14	14
		중학교	13	13
	경남	고등학교	13	13
		중학교	10	10
	전남	고등학교	14	14
		중학교	7	7
강원	고등학교	14	14	
	중학교	7	7	
합계		152		

1. 학생회 관련

1-1 학생회 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구분	참가	참여건의하면 참가	불참	기타	
서울	고등학교	2	27	20	
	중학교		7	14	3
지방	고등학교	3	1	39	
	중학교	1		23	
합계	6(4.3%)	35(25%)	96(68.6%)	3	

□□ 대부분의 학생회들이 학교운영위에 참가하지 못하며, 학생회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시안을 내린 바, 참여를 건의하면 참가할 수 있는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다.

1-2 학생회 예산 청구권한 여부

구분	청구 가능	청구 불가	기타	
서울	고등학교	36	8	5
	중학교	15	5	4
지방	고등학교	33	28	4
	중학교	9	12	
합계	93	53	13	

□□ 학생회 예산은 학생회가 예산 편성 또한 하지 못하며, 예산 청구 권한은 형식상으로나마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칙상 지도위원회가 주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인 학생회 예산이 천만원 이하가 95%를 넘고, 일반적으로 예산 청구할 수 있는 축제 예산권 또한 오백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가 80%가 넘는다.

1-3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 여부

구분	공개	비공개	기타	
서울	고등학교	39	7	3
	중학교	13	7	4
지방	고등학교	42	12	
	중학교	14	10	
합계	108	36	7	

□□ 밑의 학생설문에서도 보듯이 학생회 학생들이 예결산을 볼 수 있는 학교는 50%에 불과하다.

1-4 학교규정 중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시 학생회의견 수렴 여부

구분	수렴	비수렴	기타	
서울	고등학교	48	1	
	중학교	19	3	2
지방	고등학교	50	4	1
	중학교	24		
합계	141(92.8%)	8(5.3%)	3	

□□ 대부분의 학교규정 제개정시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회 임원들이 생활규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나, 수정되는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

1-5 학생회실 존재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타
서울	고등학교	42	7	
	중학교	7	17	
지방	고등학교	36	19	
	중학교	5	19	
합계		90(59.2%)	62(40.8%)	

□□ 학생회실 존재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으로 갈수록, 중학교로 갈수록 학생회실 등 학생회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1-6 학생회실 실제 사용여부

구분		자율	10회이하	20회이하	기타
서울	고등학교	38	1	3	
	중학교	7			
지방	고등학교	23	7	3	3
	중학교	4		1	
합계		72(80%)	8	7	3

□□ 학생회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중에서 20%는 학생회실을 학생회 담당교사가 문을 잠그거나, 다른 공간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학교도 있다.

1-7 학생회실 주요기기(복수응답)

구분		미비	컴퓨터 기기	복사기	전화기	책걸상	기타
서울	고등학교	15	22	3	1	7	3
	중학교	1	4			2	1
지방	고등학교	10	18	1	2	3	5
	중학교	4					
합계		30	44	4	3	12	9

□□ 학생회실이 있는 학교 중 약 33%가 학생회실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가 부족하다. 또한 컴퓨터 기기만 있지 인터넷이 안되는 컴퓨터 기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절반이나 됐다.

2. 학생 임원 회의 관련

2-1 04년 1학기 임원회의 횟수

구분		5회이하	6회~10회	10회이상	수시
서울	고등학교	31	5	5	8
	중학교	18	1	4	
지방	고등학교	41	7	1	3
	중학교	18	2	1	
합계		108(74.5%)	15(10.3%)	11(7.6%)	11(7.6%)

□□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회가 자치기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5회이하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달의 한번꼴로 학생회 운영에 관한 임원회의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표 2-3의 임원회의의 주요 안건을 보면, 대부분 스승의 날, 학교 환경미화, 면학분위기 조성 캠페인, 교통 지도 캠페인 등 학교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학교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회 자체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2 임원회의 교사 참가 여부

구분		참가	불참	기타
서울	고등학교	41	2	6
	중학교	22		2
지방	고등학교	47	3	4
	중학교	22		
합계		132(88.6%)	5	12

□□ 학생회 임원회의에 대부분 담당교사가 참가하고 있다.

2-3 임원회의 주요 안건(복수응답)

구분		봉사활동 (자매부대 및 불우이웃돕기)	학교 축제	학칙개정 등 학교운영에 관해	간부 수련회	학교내 행사진행 (캠페인 등)	학생회 관련	기 타
서울	고등학교	21	33	10	17	24	19	12
	중학교	10	4	5	7	13	11	1
지방	고등학교	5	8	16	3	36	16	3
	중학교	9	4	4	2	18	4	
합계		45	49	35	29	91	50	16

□□ 학생회 임원회의의 주요 안건을 보면 자매부대 결연 및 북한 용천지역 돕기 성금 모금 등 봉사활동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 학교 내 행사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

체로서 학칙이라던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3. 학급회의에 관한 관련

3-1 학급회의를 학칙대로 개최하는지 여부

구분	개최	시기에 따라 변동	개최하지 않음	기타
서울	고등학교	46	2	1
	중학교	22		2
지방	고등학교	47	2	6
	중학교	24		
합계	139(91.4%)	4	3	6

□□ 90%이상의 학교가 학급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학생회 임원들의 통계를 보면, 학급회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임원회의나 대의원회의에서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한다. 위의 표를 보면, 기타 학교를 제외하고 고 3들 또한 매주 학급회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3-2 학급회의를 대체수업하는지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타	
서울	고등학교		46	3
	중학교	1	23	
지방	고등학교	3	19	9
	중학교		17	
합계	4	105	12	

4. 대의원대회 관련

4-1 대의원대회 연간 개최 횟수

구분	5회미만	6회~10회	11회~15회	수시	안함
서울	고등학교	32	16		1
	중학교	7	16		1
지방	고등학교	29	13		11
	중학교	9	8		6
합계	77	53			19

4-2 대의원대회 04년 1학기 안건 주요 내용

구분	봉사활동 (자매부대 및 불우이웃돕기)	학교축제	학칙개정 등 학교운영에 관해	간부수련회	학교 내 행사진행 (캠페인 등)	학생회 관련	기타	
서울	고등학교	15	14	15	11	18	10	9
	중학교	10	3	1	6	17	5	2
지방	고등학교	5	6	19	4	25	10	2
	중학교	5	2	3	3	7		2
합계	35	25	38	24	67	25	15	

4-3 대의원대회를 통한 학생 건의사항 절차

구분	건의-부장-교장-결정	건의-선도위(지도위)-교장-결정	건의-부장, 교직원회의-교장-결정	사안에 따라 다름	기타	
서울	고등학교	31	3	10	5	
	중학교	12	4		3	5
지방	고등학교	19	3	14	1	9
	중학교	11		5	7	
합계	73	10	29	16	14	

□□ 대의원대회를 통한 학생 건의사항 절차는 학교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생지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원회의의 개최여부와 안전 또한 지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의견을 실현되는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4-4 대의원대회를 통한 학생 건의사항 처리 결과 공개 여부

구분	대의원회의	전교생 조회시	유인물배포	홈페이지	전체게시판	학급게시판, 조회	기타 (방송)	
서울	고등학교	13	1	10	17	20	10	5
	중학교	9	1	8	6	2	2	2
지방	고등학교	12		1	7	20	18	17
	중학교	1	1	1	7	6	3	7
합계	35	3	20	37	48	33	31	

5. 학생회장 선출 관련

5-1 학생회장 자격제한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타
서울	고등학교	42	7	
	중학교	24		
지방	고등학교	40	15	
	중학교	20	4	
합계		126(82.9%)	26(17.1%)	

과반수가 넘는 학교가 아직도 학생회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5-2 학생회장 자격제한 종류(복수응답)

구분		출석율	학급회장, 부회장 역임	징계	성적	기타
서울	고등학교	7	2	43	9	3
	중학교	3	1	23	3	1
지방	고등학교	27		28	26	2
	중학교	5		18	9	
합계		42	3	112	47	6

학생회장의 자격제한에서 서울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봉사활동 이하의 징계로만 학생회장의 자격제한으로 두는데 지방같은 경우는 70%가 출석, 징계, 성적 등 세가지를 고루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어 학생회장의 자격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학생회장 선출 방법

구분		직선	간선	기타
서울	고등학교	49		
	중학교	24		
지방	고등학교	55		
	중학교	24		
합계		152		

현재 학교는 모두 직선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6. 학생회칙 및 학칙

6-1 학생회칙 및 학칙 공개 방식(복수 응답)

구분		대의원 회의	전교생 조회시	유인물 배포	홈페이지	전체 게시판	학급게시판, 조회	기타 (방송)
서울	고등학교	1		25	26	3	15	6
	중학교	2	2	13	9	1	5	
지방	고등학교	2	1	22	24	9	13	7
	중학교	1		4	17	1	5	1
합계		6	3	64	76	14	38	14

과반수의 학교가 학교 입학 초기 학생회칙 매뉴얼이나 학생수첩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칙이나 생활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거나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2 학생회칙 및 학칙 제개정 절차

구분		건의-학생지도위-학운위-교장	건의-담당부서-학운위	건의-교직원, 부장회의-학교장-학운위	건의-학생지도위	기타
서울	고등학교	13	5	18	8	5
	중학교	3	7	8	1	3
지방	고등학교	3	6	18	5	14
	중학교	1	3	10	5	5
합계		20	21	54	19	27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회칙을 학생회 스스로가 의견을 내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에 학생지도위나 담당 부서, 혹은 교직원회의 등 기본 두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학생회 임원들의 학생회 운영 현황

설문조사 분석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14개 학생회 임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분석해봤을 때, 학교측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와 다르거나 혹은 학생회 임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예산

대부분의 학교 학생회칙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에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칙 '재정'에서도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총 대의원 회의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학생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편성한다'고 세부항목을 명시하였다.

학교측 자료에 의하면 학교측은 학생회에 '축제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회에 '학생회 예산 청구권'을 부여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14개 학교중 7개 학교 학생회는 '예산액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불과 4개 학교만이 학생들에게 예결산을 공개한다고 답했다.

이는 학칙에 명시된 학생회비 예산 편성권은커녕 학생회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학생들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학생회실 기기

대체로 학생회 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학생회실 정도는 보장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만한 업무 진행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학생들은 회의 외에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학생회 예산 등을 투명히 밝히고 학교측은 학생회실 기기를 보충해야 할 것이다.

3. 학급 회의

현재 학급회의는 학급회의 및 교사 재량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형

식적으로 짧은시간 회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으로 대체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아예 해본적이 없다고까지도 말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설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학급회의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회 임원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안전을 논의하고 그것을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의까지 올릴 수 있는 통로가 아예 학급회의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현재 학급회의를 교사 재량 시간으로 사용할 수 되어있는 현행 교육과정을 학급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고 학급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개진권

학생들에게만 질문했던 문항이 학생들의 '의견개진권'이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형식적인 의견개진권이 부여되었고, 그 방법으로는 '전체학생, 설문지', '학급회의-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측에서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학생회칙' 혹은 '생활규정'에 반영되어 수정되는 과정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실질 반영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는 볼 수 있으나, 현재 학생회가 학생의 대표기구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 등에서 끝까지 협상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공개한다! 학생은 전혀 모른다

- 같은 학교의 학교 보고서와 학생임원 설문 비교 -

같은 학교에서 교육청 자료와 학생회 임원 설문문이 같이 수합된 학교가 7개 학교였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육청 제출 자료와 학생회 임원 설문 내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교육청 보고자료는 단답형이고 학생 설문은 자유로운 주관식이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 확연했다.

교육청 자료와 학생 설문문의 내용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학생 임원의 설문내용이 현실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생설문에서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학생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임원이 학생회운영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정도가 이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표의 내용은 교육청 보고자료, 주관식 설문은 학생 임원 답변입니다.

<S고등학교>

1. 교사- 학생회 권한 관련

학생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04년 전체 학생회비 예산액	04년축제 예산액	학생회 예산 학생회가 청구권한 여부*	학생회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지 여부	학교규정중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시 학생회 의견 수렴여부
학생회에서 참여를 건의하면 허용함	16,612,880	6,167,500	학생회 예산편성 →대의원회·지도위원회 심의→담당부서와동아리부서에서신청→학교장결재→예산집행	공개함	수렴함

1. 학생회 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참가 안함
2. 2004년 학생회비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릅니다.

3. 2004년 축제 예산은 얼마였나요? 모르겠습니다
4. 축제예산편성, 사용,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5. 학생회임원이 예산사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6. 학생회비 사용 예산 결산을 공개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7. 학교 규정중 학생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의 수렴이 없다고 봐야죠

2. 학생회실 관련

학생회실 존재여부	학생회임원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한 여부	04년 1학기 실제 사용횟수*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 (컴퓨터,프린터,인터넷연결,복사기 등)
있음	자율사용	수시사용	TV 1, 컴퓨터 1, 프린터 1, 인터넷 연결, 철제 캐비닛 1, 칠판 1, 시계1.

1. 학생회실이 있나요? 네
2. 학생회 임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학생회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3. 1학기동안 학생회실을 몇회나 사용했나요?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꼭 사용했습니다.
4. 학생회실을 사용하는 용도는? 회의죠
5. 사용횟수가 드물다면 이유는? 아무래도 좁고 그래서...
6.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컴퓨터, 프린터, 인터넷연결, 복사기 등등)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옛날 컴퓨터 1대가 전부입니다.

3. 학생회임원회의 관련

학생회 임원종류	임원 인원	임원선출방법	04년 1학기 임원회의 횟수	담당교사 참가여부	1학기 임원회의 주요 안건
회장·부회장(2), 총무부·차장, 학습부·차장, 학예부·차장, 선도부·차장, 특별활동부·차장, 홍보부·차장, 선교부·차장, 환경부·차장	총 19명 회장단 (3명), 부장·차장 16명	회장·부회장 →직선제 부·차장 →회장의 지명	3 회	참가함	1> 학생회비 예산 편성 2> 급식 도우미 봉사자 모집 3> 학생회의실 환경 미화 계획 4> 교내 봉사활동 계획

1. 학생회 임원은 몇 명이며 임원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21명입니다. 총무, 학예, 홍보, 선도, 선교, 환경, 학습부가 있으며 학년장이 있습니다.
2. 학생회 임원 선출방법(교사임명, 학생회장 임명)은? 학생회장이 임명합니다.
3. 2004년 현재까지 임원회의를 몇회나 했나요? 일주일이 한번씩 합니다.
4.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교내 행사에 대한 회의가 주요 안건입니다.
5. 담당교사가 참가하나요? 아닙니다

4. 학급회의 관련

학년	학급회의를 학칙(규정)대로 개최하는지 여부	학급회의를 대체수업으로 하는지 여부	대체수업 유형
1학년	학칙대로 운영함	안함	없음
2학년	학칙대로 운영함	안함	없음
3학년	학칙대로 운영함	안함	없음

1. 학급회의를 시간(시간표상) 은 월 몇회인가요? 주 1회입니다.
2. 학급회의를 대체수업(보충, 자율학습)으로 하고 있나요? 그 유형은? 100% 자율학습입니다.
3. 학급회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가끔 회의 하는척 하려고 하는 안건은 어떻게 하면 중간 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4. 학급회의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일단은 실속있는 회의를 했으면...

5. 대의원대회 개최 관련

대대 연간 개최 횟수	04년 1학기 안건 및 결정 내용	대대 참가 교사범위 및 인원
2회	1.학년장 선출 2.학생회비 예산편성 및 심의 3.춘계현장학습과 간부수련회 5.병영체험실시 여부조사	교장, 교감, 특활부장 및 기획, 학생회 담당교사, 학생 90명

1. 2004년 대의원회의 개최 횟수 학기별 한번씩
2. 04년 1학기 대의원회의 안건은 무엇이었으며 결정사항은 무엇이었나요? 학년장을 선출 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3. 대의원회의 참가 교사는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특별활동부 선생님들이 참석하지만 과자 나눠주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인원은 5명정도???
4. 회의에서 건의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니까? 처리결과는 공개됩니까?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건의사항을 각 학급 회장, 부회장들이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학급회의 시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학급회의가 없기에 대의원회

의에서는 전혀 할말이 없습니다.

6. 학생 건의 사항 처리 관련

대대 등 통한 학생건의 사항 처리절차 (용의복장 규정, 급식, 시설개선 등)	처리 결과 공개 여부	처리결과 공개 방법
학급자치회의 또는 학생회 자치회의의 건의 ⇒건의사항 일지 작성 ⇒학생회장단 건의사항 해당부서 면담 및 협의 처리 ⇒결과 학급전달사항 또는 게시판에 처리 결과 공고	공개함	전달 및 공고

7. 학생회장 선출방법 등 관련

학생회장 자격제한 여부	자격 제한 종류	학생회 선거시기	학생회장 선거 방법(직, 간선)	학생회 부서 현황
「제7장 선거 제31조 2항」 후보자는 재학 중 자체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학생이어야 한다.	징계	1학기말	직선제	총 8개 부서 총무부, 학습부, 학예부, 선도부, 특별활동부, 홍보부, 선교부, 환경부

1. 학생회장 선거는 직선인가요? 간선인가요? 직선입니다.
2. 학생회 부서는 무엇무엇이고 각 부서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3. 학생회장 후보에 자격제한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근신 받은자는 안됩니다.

8. 회칙 및 학칙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학생공개 여부	공개 방식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 처리 방법	학생회칙 및 생활 규정 마지막 개정 연도일시	제개정 논의 및 처리 시기
공개함	학기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내 게시판에 부착	「제 8장 제47조 1항」 ①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재적 대의원1/2이상이 발의하여 대의원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③대의원회 의장은 ①②항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으로 확정	학생회칙 2004년 3월 20일 생활규정 2002년 6월10일	학기초

1.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나요? 어디서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2.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책자
3.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4.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개진권이 있나요? 전혀 학생들 의견은 필요없습니다.

<T고등학교>

1. 학생회 권한 관련

학생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04년 전체 학생회비 예산액	04년추계 예산액	학생회 예산 학생회가 청구권한 여부*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지 여부	학교규정중 학생관련 규정 재개정시 학생회 의견 수렴여부
안함	13,000천원	8,500천원	학생회예산편성 -대의원회의 -담당부서건의 -학교장 결재	공개함	수렴함

1. 학생회 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예
2. 2004년 학생회비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3. 2004년 추계 예산은 얼마였나요? 학생회=200만원
4. 추계예산편성, 사용, 있었나요? 예
5. 학생회임원이 예산사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회 담당 선생님을 통해
6. 학생회비 사용 예산 결산을 공개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나요? 공개 안합니다
7. 학교 규정중 학생관련 규정의 재개정시 학생회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안합니다

2. 학생회실 관련

학생회실 존재여부	학생회임원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한 여부	04년 1학기 실제 사용횟수*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연결, 복사기 등)
있음	자율적으로 사용	자율적인 경우 미기재	컴퓨터1대, 인터넷 가능

1. 학생회실이 있나요? 예
2. 학생회 임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예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고 학생회 키도 있습니다
3. 1학기동안 학생회실을 몇회나 사용했나요? 100번정도 (거짓말아님)
4. 학생회실을 사용하는 용도는? 회의
5. 사용횟수가 드물다면 이유는?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사용절차가 불편해서, 기기가 없어서, 지저분해서 등등)
6.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컴퓨터, 프린터, 인터넷연결, 복사기 등등) 책상 3개, 캐비닛, 의자, 화이트보드, 거울 그외 다양한 잡다한 물건들..

3. 학생회임원회의 관련

학생회 임원종류	임원 인원	임원선출 방법	04년 1학기 임원회의 횟수	담당교사 참가여부	1학기 임원회의 주요 안건
학생회장,부회장 총무부장,차장 학예부장,차장 체육부장,차장 봉사부장,차장 홍보부장,차장 클럽활동부장,차장	14	학생회장, 부회장 직선, 기타임원 회장의 지명	2회	참석함	-북한용천폭발참사 -축제 준비에 관한건

1. 학생회 임원은 몇 명이며 임원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14명, 총무부 학예부 봉사부 홍보부 체육부 클럽활동부
2. 학생회 임원 선출방법(교사임명, 학생회장 임명)은? 선거로 통해
3. 2004년 현재까지 임원회의를 몇회나 했나요? 5번
4.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축제 시즌이라 축제 회의
5. 담당교사가 참가하나요? 네

4. 학급회의 관련

학년	학급회의를 학칙(규정)대로 개최하는지 여부	학급회의를 대체수업으로 하는지 여부	대체수업 유형
1학년	학칙대로 운영	안함	없음
2학년	학칙대로 운영	안함	없음
3학년	학칙대로 운영	안함	없음

1. 학급회의를 시간(시간표상) 은 월 몇회인가요? 1회
2. 학급회의를 대체수업(보충, 자율학습)으로 하고 있나요? 그 유형은? 네 합니다 자율습
3. 학급회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학급회의 전 주에 주제를 선발
4. 학급회의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좀 더 적극적인 참여

5. 대의원대회 개최 관련

대대 연간 개최 횟수	04년 1학기 안전 및 결정 내용	대대 참가 교사범위 및 인원
6회	안전: 1.북한용천폭발성금모금 2.북한교육용기자재성금모금 결정: 학급별로 성금모금	특활부장,학생회담당교사, 학생62명

- 2004년 대의원회의 개최 횟수 6회
- 04년 1학기 대의원회의 안전은 무엇이었으며 결정사항은 무엇이었나요? 학교에 대한 건의
- 대의원회의 참가 교사는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생회 담당 선생님들, 임원 대략 30

6. 학생 건의 사항 처리 관련

대대 등 통한 학생건의 사항 처리절차 (용의복장 규정, 급식, 시설개선 등)	처리 결과 공개 여부	처리결과 공개 방법
학생회건의-회장단 교장,교감면담 대화-협의-결정	공개	게시판안내

- 회의에서 건의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됩니다? 처리결과는 공개됩니다?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들, 공개 안합니다

7. 학생회장 선출방법 등 관련

학생회장 자격제한 여부	자격 제한 종류	학생회 선거시기	학생회장 선거 방법(직, 간선)	학생회 부서 현황
있다	교칙에 의해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매년 6월중	직선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봉사부, 홍보부, 클럽활동부

- 학생회장 선거는 직선인가요? 간선인가요? 직선
- 학생회 부서는 무엇무엇이고 각 부서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부 학예부 홍보부 봉사부 체육부 클럽활동부
- 학생회장 후보에 자격제한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아니요

8.회칙 및 학칙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학생공개 여부	공개 방식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 처리 방법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 마지막개정 연도일시	제개정 논의 및 처리 시기 (학기초,학기말 등)
공개함	매뉴얼 제공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로 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04년 7월	학생회장선출세칙 1.선출시기: 당해년 6월중에 실시로개정 학생회운영위원회 4.조직시기 : 신입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7월초로 개정

-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나요? 아니요
-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개진권이 있나요?

<참고자료>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 학생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도했던 어느 학생회장의 답변서 -

학생임원의 답변서중 눈에 띄는 답변서가 있었다. 답변 내용으로 봐서 학생회장은 학생회칙도 바뀌보려고 대의원 회의에 제출해보고, 운영위 회의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건의사항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루에 한번씩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해 보려고 노력한 듯 하다.

그런데 학교 교사의 답변이 걸작이다.

“축제 예산 20만원”

“학생회칙 공개! 학생답게 행동하면 벌 받을 일 없으니까 공개 안 한다는 대답 들음”

“건의사항을 따로 올리지만, 더디게 받아들여짐.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검토함”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학생회 권한 관련>

1. 학생회 대표 학운위 참가여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 2004년 학생회비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축제 때 지원받는 20만원.
3. 2004년 축제 예산은 얼마였나요? 20만원.
4. 축제예산편성, 사용, 있었나요? 예산안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음.
5. 학생회임원이 예산사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기안을 만들어서 제출.
6. 학생회비 사용 예산 결산을 공개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나요? 축제 자금 사용 내역서를 올림.
7. 학교 규정중 학생관련 규정의 재개정시 학생회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학교 규정의 재개정시 수렴은 되지 않고,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해 학생회칙을 개정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무시됨.

<학생회실 관련>

1. 학생회실이 있나요? 예
2. 학생회 임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열려 있음.
3. 1학기동안 학생회실을 몇회나 사용했나요? 계속.
4. 학생회실을 사용하는 용도는? 모임 장소.
5. 사용횟수가 드물다면 이유는? 사용 많이함.
6. 학생회실 비치 주요 기기(컴퓨터, 프린터, 인터넷연결, 복사기 등등) 없음.

<학생회임원회의 관련>

1. 학생회 임원은 몇 명이며 임원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학생회장, 부회장, 종교,총무, 서기, 회계, 문예, 봉사, 예의, 훈련, 환경, 체육, 홍보, 장학, 통신, 음악, 문화부장, 차장 각 1명씩 총 32명.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
2. 학생회 임원 선출방법(교사임명, 학생회장 임명)은?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선제, 임원들은 선배들이 선출.
3. 2004년 현재까지 임원회의를 몇회나 했나요? 한 달에 1번 원칙을 지키고 있음.
4.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나요? 급식, 학생회칙 개정, 스승의날 행사 등등.
5. 담당교사가 참가하나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모두(전교직원, 전교생)에게 공지를 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청 가능. 담당교사의 경우 선생님이 오고 싶으실 때만 참여하심.

<학급회의 관련>

1. 학급회의를 시간(시간표상)은 월 몇회인가요? 1주일에 한 시간.
2. 학급회의를 대체수업(보충, 자율학습)으로 하고 있나요? 그 유형은? 반반이다.
3. 학급회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임원선출, 청소계획, 소풍 장소 결정, 자리 정하기 등등.
4. 학급회의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활성화.

<대의원회의 관련>

1. 2004년 대의원회의 개최 횟수. 한 달에 한 번씩.
2. 04년 1학기 대의원회의 안건은 무엇이었고 결정사항은 무엇이었나요? 1년 계획 발표.
3. 대의원회의 참가 교사는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학생회 담당 교사. 1인.
4. 회의에서 건의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처리결과는 공개됩니까?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화장실 위생, 교실문 교체 등등. 건의사항을 따로 올리지만, 더디게 받아들여짐.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검토함.

<학생회장 선출방법관련>

1. 학생회장 선거는 직선인가요? 간선인가요? 직선.
2. 학생회 부서는 무엇무엇이고 각 부서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에 있다.
3. 학생회장 후보에 자격제한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前학기 평점이 4.0이상, 교회 출석(이제 없어짐), 품행이 방정하고, 징계(교내 봉사 이상)받은 일이 없는자.

<회칙 및 학칙>

1.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나요? 안 됨.

2. 공개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서 여쭙봐도 학생답게 행동하면 별 받을 일 없으니까 공개 안 한다는 대답 들음.
3. 학생회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대의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무시되는 상황.
4.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개선권이 있나요? 없다.

[참고자료3] 학생의 권리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금천 (서울 영일고등학교 교사)

I. 문제와 해결 방향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현 주소이다. '학생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전혀없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학교측의 주관적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와 주체적 역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학생의 권리는 선언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학칙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학칙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는 없는 것이다. 주체적 역량에서 보자면 학생의 권리 의식을 신장하고 운동을 통하여 확보할 조직과 정책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권리 신장이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역량의 신장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의 연대가 중요하다 하겠다.

II. 현행법의 문제

1. 교육기본법

1) 문제

-학생의 권리가 학생들의 권리로 표현되지 않고 타인의 책무로 표현되고 있다.

-학생의 의무는 학교의 규칙준수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관련법

제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과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1) 문제 (학생 자치 활동 관련)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것으로 조문화되어 학생의 권리가 아닌 학교의 의무로 표현되고 있다.

*학생 자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학칙에 위임함으로써 학칙 제·개정권자에게 학생의 권리를 알렸다.

*학칙을 제·개정권은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국공립학교는 학교장이 갖고 있다.

2) 관련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第8條 (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유치원의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문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4) 관련조항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

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고나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적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사·광역시 또는 도(이하 "사·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사·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Ⅲ. 제도화 방안

1. 교육기본법 개정

-학생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학교장 중심의 소극적 조문이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인 학생의 주체적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

1) 학생회의 법제화

-권리 행사의 주체로써 학생회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여야 한다.

2) 학운위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여 방식은 구성 방식, 발언권, 투표권 행사라는 세부적인 부문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1년 2월 국회 제출)

-학생회 법제화는 조문화하였으나,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

② 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둔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고나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교사회)①학교에 교사회를 둔다.

② 교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敎運營委員會는”을 “학교운영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敎運營委員會의”를 “학교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31조의2(학부모회)① 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법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익이사를 추천하여 사립학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의 이사회 참여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해결한다.

3)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2001년 2월 국회 제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운영 절차를 민주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중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상 정수의 2분의 1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수회와 직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공익이사”라 한다).

③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파견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공영이사”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 중 1인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수회와 직원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전문가로 한다.

⑤ 20이상의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감사의 추천은 각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가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남은 과제

1)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안의 구체화

*참여 방식 : 직접 참여인가 추천권 행사를 통한 간접 참여인가?

*권한 범위 : 의결권을 가질 것인가? 발언권과 참관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학생 자치 활동이나 건의 사항 처리와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2) 학생의 주체 역량 강화

*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 의식이 고양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는 불가능함

*이를 위하여 학교 안 구성원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임, 특히 학교 운영위원,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학생회 활동의 내용을 생한하고 지원하는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청소년 단체의 상호 협조가 절실함.

[참고자료4] 그래도 희망은 있다

-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쓴 활동사례 -

학생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학생 스스로의 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등학교 부학생회장

우리 학생회는 동아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동아리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학생회원 역시 1학년 신입생을 뽑아서 3년 동안 학생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회장선거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결성되고,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후보를 지원 받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비롯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유세를 펼치고, 선거당일에 투표를 하여 당일 날 집계를 하여 바로 발표가 된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면 나머지 임원진들은 학생회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임원진(각부 부장차장)까지 정해지면 학생회의 조직이 완성된다.

학생회는 전반적인 학교 운영을 맡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알고 매일 매일의 모임과 일주일에 한번의 정기회의로 학교 일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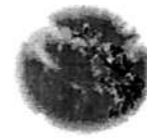
학생회의 일을 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곤 한다. 먼저 선생님의 계약이 은근히 많음을 느낀다. 예로 대의원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있다면, 대의원회의에서 일단은 담당 선생님의 손길을 거치게 된다. 선생님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건의 사항을 채택하여 상부에 보고를 드린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그냥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하나는, 학생회장 후보 문제이다. 학생회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모범적인 학생보다 학교에 많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 또한 필요한 학생이다. 하지만, 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는 성적으로서 판단한다. 과연 성적이 좋다고 모범적인 학생인가? 학교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친구 역시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친구의 자질은 모두 무시당했다. 교육부에서 성적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학교는 아직도 성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회칙, 학교 운영 등이 선생님들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회칙을 지키는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채 정해지는 회칙, 교칙 등이 누가 정하는지 학생들은 확실히 모른 채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과의 너무 많은 세대 차이 역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바라건 데, 학생과 교사가 고민해서 함께 만드는 학교, 학생회였으면 좋겠다. 학생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학생 스스로의 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생회장이 제안하는 선거준비 10계명



선거 준비 10계명

역사만큼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1. 자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한다
 -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 왜 꼭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장이 되려 하는지를 정리한다. = 슬로건 설정
2.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다
 - 총참, 참모들 구성, 나의 세 만들기
3.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기
 - 설문조사 또는 참모와의 회의를 통해서
4. 공약설정단계
 - 공약과의 상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전기 선배, 또는 참모들과의 회의, 행정적 문제들은 자신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 학교와 공약 상의
5. 공통점 찾아내기
 - 자신의 슬로건과 일치하는 부분을 끌어낸다
6. 유세 컨셉설정
 - 자신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홍보의 컨셉을 설정한다



선거 준비 10계명

역사
를
만
들
어
가
는
것
은
바
로
우
리!

7. 유세 준비단계

- 먼저 학교에서의 홍보나 유세의 제약이 있는가? 유세기간 선거날짜 등을 알아본다.

홍보 컨셉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들로 나누어 진행시킨다

예) 자신의 얼굴 & 공약 & 슬로건 홍보,

대자보 활용, 선거신문, 포스터, 강당유세, 플랜카드, 운동장 등·학교, 점심시간활용여부, 학교 안 밖의 게시물 부착 여부 등

8. 유세

- 선거 유세 시 타 후보들과의 마찰은 삼가한다.

참모들간의 마찰을 가장조심!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말 것!

비열한 방법은 쓰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자!

9. 선거

어떠한 결과이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것

항상 겸손할 것

당선 시 다른 후보들과 참모들을 먼저 생각하여 행동할 것

(당선되지 않은 후보도 학우들이다. 선거에 나갔던 만큼 학생회 기반세력이 될 수도 있다.)

10. 뒷마무리

(선거가 끝났다고 나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학생의날 영상과 함께 내보낸 방송

<11월 3일 영상과 함께 아침방송을 할 멘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000입니다.

오늘 저희 학생회에서는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의 날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처럼 1년 중 단 하루인 학생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자 이렇게 아침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72년 전 오늘은 저희와 같은 또래에 선배님들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군위안부, 강제징용과 징병 등 일제에 탄압에 이기지 못한 학생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목소리를 내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며,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런 과거 선배님들의 용기를 바탕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 곳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72년이 지난 오늘 우리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하고자 정당히 말하는 것이 진정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아 갈 우리 학생들에 마음가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고 교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열중 할줄 아는 자세와 더불어 어떤 일이든지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학생의 날에 의의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봅시다. 과연 내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여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학교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공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항상 자신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연남인으로 또 한국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72주년 학생의 날 바로 여러분들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바라는 점(몇몇 선생님께...)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 학교를 국가에 비유한다면, 국민은 학생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학교라는 사회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감히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배려가 중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조차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보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때, 더 발전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학생들을 아끼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운영위원들은 학우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회의와 설문을 거쳐 세운 계획들이, 선생님의 눈에는 아직 철없는 아이들의 허황된 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의 말 잘 듣는 심부름꾼도 아니다.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이다. '과자 사 달라 떼쓰는 아이'를 달래듯 한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는 절망밖에 볼 수가 없다.

00여고 학생회장이 제안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일도 된다

1. 학생회 구성원들간의 친목다지기

학생회 구성 인원들은 나와 일년이란 세월을 학우들의 불만 투성인 학교 안에서 학생회 일을 해야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학생회 구성인원들 사이의 의견충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그 의견충돌로 인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이리저리한 구성원간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구성원들간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되어 학생회가 굴러가기는커녕 구성원간의 문제로 인하여 뒤로 밀리게 되어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회 일은 즐거움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로 학생회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적이 많아 힘든 학생회 일을 더욱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학생회 구성인원들은 그냥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와 학우에 대한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인 학생회라는 한 가족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학생회 구성인원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 학생회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2. 나는 없다, 다만 우리만 있을 뿐..

학생회는 나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오늘 하루 빠져도 되겠지...내가 하는 일은 그리 어렵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뒤에 하지 뭐..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학생회 일에서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뒤처지거나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바 충실을 다할 때 학생회는 학우들 속에서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각, 지식의 폭을 넓히기

학생회 일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들이 좀더 편하고 유익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시설복지 뿐 아니라 학우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도, 우리들의 현실을 뒤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일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알아야하고 많은 곳에 관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다른 불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불만들을 최소화시키고 좀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려는 것이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생각하는 회의들을 해보아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야 말로 성공적인 활동이 아닐까요?

4. 무모함의 용기

실패할 것 같은 학우들의 건의....

선생님의 반응이 두려워 아님 거부당할까 뻔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진행 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이럴 때 한번 학우들을 믿고 무모한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지 학우들이 여러분의 땅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학생회 일을 하는 중 중요한 점 또 한가지...

학생회는 시대에 도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함으로써 학우들의 참여를 모아 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우들의 반응에 조마조마하여 지금 하는 것에도 만족하고 있는데 괜한 새로운 시도가 학우들에게 나쁜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회가 무덤을 파서 들어가는 무모한 시도는 아닌가 싶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학우들의 반응에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회 일은 시청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실패원인을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회 임원들이 생각하는 '학생회 문제점과 대안'

정리 : 00여고 2학년, 학예부장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8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임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학생회 현실과 대안을 찾아보자'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학생회 활동의 소중함을 느끼고 학교에 돌아가 열심히 활동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벽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회 현실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회 활동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학생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생회 현실과 문제점을 이야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회 운영위원들의 활동의 의지가 부족하다
- 학생회 정체성 부재로 학생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소중함을 잘 모른다.
- 학생회 내부의 단합 및 조직력 약화
- 오랜 학생회 활동의 침체로 전통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 여러 가지 미숙함과 학교와의 마찰 등으로 의욕 상실되고 의지가 꺾인다.

-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자치활동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지원해주지 않는다.
 -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권이라는 학교와 사회의 인식.
 - 학생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대의원회의 결과, 게시물에 등에 대한 사사건건 검토받는 등 학생회 독립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 학생회가 학우들의 대표 기구로서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학생회 활동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공간, 운영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비를 털어야 한다.
 - 나만 공부잘해서 대학가면 된다라는 식의 개인이기주의적 사회풍토도 문제이다.
 - 학생들의 대표기구임에도 형식적인 학생회로 전락하여 학생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 학우들이 요구하는 사업,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사업 부재.
 - HR이나 대의원회의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학우들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다.
 - 형식적인 학생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는 학우들의 잘못된 인식
-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현실이 정말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점점 위축되어만 가는 우리의 학생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위축되어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도 학생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막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2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나라의 독립과 학생들의 교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섰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옛 선배님들에게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구들이 모여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물러났듯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 학생회의 역사를 알고 학생회 정체성을 되찾아 열심히 활동하자.
- 학생회활동의 의의나 임원들의 자세, 다른학교 모범사례 등의 정기적 교육을 개최한다.
- 학생회 간부수련회 등을 통하여 단결하고 똘똘뭉친 학생회가 되자.
- HR이나 대의원회의를 활성화시키고 공개화하자.
- 학생회 회의 결과를 반드시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진행하고 학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 회의를 자주하자
- 전체적인 1년 연간 계획을 짜자.
- 교류를 통한 모범사례 등을 자주 접하자.
- 학생회의 존재를 교문인사 등을 통하여 학우들에게 알려낸다.
- 운영위원을 뽑을 때 신중히 뽑고 점수 때문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 운영위원을 뽑자.
- 여러학교와 교류하여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보자.

- 학생회 연대모임 등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자.

- 입시위주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학생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학생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 형식적인 학생회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
- 학생회 공간과 예결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에 이야기해보고 요구해보자.
- 학교와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언과 도움을 얻자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의 가장 현실적인 벽인 학생회 활동을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회활동을 맘껏 펼칠 수 있게 법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학교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른 누구의 힘도 아닌 당사자 바로 우리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학생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힘을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 속에서도 진정한 대표기구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학교에서도 학생회를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회 활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합시다.